제209회 제1차 정례회
광 진 구 의 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17. 6. 14.

기획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제1349호

2017.6.1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7.05.11

나. 회부일자 : 2017.05.19

다. 상정일자 : 2017.05.25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재식 행정국장

나. 제정이유

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 (안 제3조)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수행사업들에 대하여 규정 (안 제4조)
- 운영 및 위탁관리, 이용대상·시간, 지도·감독, 시설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~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진로교육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입법예고 : 2017.3.17. ~ 4.6.(결과 : 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 (전문위원 정수용)

○ 본 제정조례(안)은 2017년 5월 11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.

○ 본 조례(안)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광진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진로수업,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, 진로정보 제공,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역량개발을 돕기 위함임.

○ **주요 제정내용**은

- 안 제1조, 제2조에서는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,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,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,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인력 및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~제11조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과 이용시간, 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**종합 검토의견**으로,

- 현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교육과정 중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,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있으며,
- 교육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장래의 사회역군으로 성정할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학창시절부터 진로를 체험하도록 하여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.

- 다만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○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재석위원 5인 중 **찬성 5인**으로 **원안가결**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　음